

□ 코로나19 의심자 및 확진자 발생 시 관리체계

구분	주요 내용					
학생 (수업 등 학교생활)	의심자	신고 ☎	소속학과(부) ※ 국제교류교육원 (외국인) ↓ 즉시 신고 일상회복지원단 (☎ 7068, 7119)	즉시 검사 ☎	선별진료소 (코로나 검사) ↓ 양성(확진) 격리 치료	음성 → 해제 · 감시 (재검사)
학생 (생활관 거주)	의심자	신고 ☎	생활관 (야)생활관방호원 ※ 국제교류교육원 (외국인) ↓ 즉시 신고 일상회복지원단 (☎ 7068, 7119)	즉시 검사 ☎	선별진료소 (코로나 검사) ↓ 양성(확진) 격리 치료	음성 → 해제 · 감시 (재검사)
※ 주간 발생(의심자): 격리실 이동 ※ 야간 발생(의심자): 익일 격리실 이동						
교직원	의심자	신고 ☎	소속부서 및 학부(과) ↓ 즉시 신고 일상회복지원단 (☎ 7068, 7119)	즉시 검사 ☎	선별진료소 (코로나 검사) ↓ 양성(확진) 격리 치료	음성 → 해제 · 감시 (재검사)
산학협력단 연구원	의심자	신고 ☎	산학협력단 ↓ 즉시 신고 일상회복지원단 (☎ 7068, 7119)	즉시 검사 ☎	선별진료소 (코로나 검사) ↓ 양성(확진) 격리 치료	음성 → 해제 · 감시 (재검사)

※ 참고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